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가합5727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오민정

피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스

담당변호사 박희정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환

변론 종결 2021. 3. 10.

판결 선고 2021. 3. 31.

주 문

1.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C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관)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 A은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20. 접수 제1210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13. 7. 3.부터 2019. 2. 26.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발급계약 및 15회에 걸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 등을 해주었는데, D의 대표이사인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19호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2019. 7. 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9. 9. 19.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20601호로 위 1)항의 연대보증을 이유로 2,907,763,3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9. 27. 그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2,907,763,320원 중 C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2018. 12. 20. 및 2019. 1. 10. 이전까지 이루어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금 원금은 2,250,511,200원이었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법률행위 등

1) C은 2018. 12. 20. 피고 A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의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위 목록의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

채무자를 D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9. 1. 11.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등기원인이 "2019. 1. 10. 매매", 거래가액이 "3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등기원인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F은 2020. 5.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0. 9. 17. G에게 2020.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유찰을 거쳐 그 결정이 취소되었다가, 2020. 8. 27. 같은 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피고 A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으로 6곳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A은, D의 대표이사인 C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 A에 담보를 제공하여 D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유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고,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의 2019. 8. 16.경 가액이 34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의 2019. 8. 19.경 가액이 262,000,000원인 사실, C이 2018. 12.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2018. 12. 20. 이전까지 이루어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금의 원금만 2,250,511,200원에 이른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초과 상태에 있기는 하였다.

다) 또한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호증,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A에 484,646,115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새롭게 지게 된 사실, D이 2018. 12. 무렵 피고 A 외에도 다른 채무자들을 상대로 9,06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다가 2019. 5. 31. 기업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 을가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2020. 12. 1.자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인 C이 주채무자인 D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의 특정 채권자인 피고 A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로서, C이 선택할 수 있는 D 및 자신의 채무 변제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나), 다)항의 각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사해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합성수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은 2011.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실내외 바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에 우레탄 바닥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D이 그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A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3616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D이 피고 A에 58,441,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고, D은 이후 피고 A에 위 58,441,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피고 A은 2018. 5. 24. D과 사이에 새롭게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18. 5. 24.부터 1년(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갱신 된다), 물품대금 지급일을 물품을 공급받은 달에 정산 후 그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피고 A은 D에 2018. 5. 31. 공급가액 20,803,800원, 2018. 6. 30. 공급가액 18,639,505원, 2018. 7. 31. 공급가액 101,319,148원, 2018. 8. 31. 공급가액 71,607,565원, 2018. 9. 28. 공급가액 57,892,513원, 2018. 10. 31. 공급가액 434,813,300원, 2018. 11. 30. 공급가액 289,120,98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수량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③ D이 위 ①항과 같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30.까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982,044,715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A은 2018. 12. 초순경 D에 추가적인 물품공급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④ D은 피고 A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으로 6곳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의 대표이사인 C은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A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물품공급 중단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2019. 1. 14.까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물품공급을 계속하였다.

⑤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A으로부터 484,646,115원 상당의 물품을 새롭게 공급받았는데, 2018. 12. 21.부터 2019. 4. 30.까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1,298,840,150원을 지급받아 피고 A에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8. 12. 27.	89,107,200	2019. 1. 31.	13,488,000
2019. 1. 22.	20,000,000	2019. 2. 1.	5,152,000
2019. 1. 29.	16,940,000	2019. 2. 8.	330,000,000
2019. 1. 30.	14,420,000	2019. 3. 5.	30,892,800

⑥ D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날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D의 대표이사인 C이 D의 사업 외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득원이 있었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력을 확보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2019. 1. 10. 이전까지 이루어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금의 원금만 2,250,511,200원에 이르고, 이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의 2019. 8. 16.경 가액이 34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의 2019. 8. 19.경 가액이 262,000,000원인 사실, C이 2018. 12.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2019. 1. 10. 이전까지 이루어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금의 원금만 2,250,511,200원에 이른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위 1)항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19. 1. 10.경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의 가액이 340,000,000원,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의 가액이 262,000,000원인 각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1. 10.경 그 실제 피담보채권이 최소 64,000,000원인 사실, K이 2019. 1. 10.경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로 200,000,000원 상당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L 주식회사가 2019. 1. 10.경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은 2019. 1.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약 76,000,000원¹⁾:212,000,000원²⁾의 비율로 나누어 그 담보가치를 취득하고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이 2019. 1. 10.경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가치는 적어도 23,222,223원(이 사건 제1항 부동산 가액 340,000,000원 - 위 64,000,000원 - 위 200,000,000원 ~ 52,777,777원³⁾)에 이른다.

3)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어도 23,222,223원 상당의 가치가 남아있는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그 재산의 형태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 B의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자신이 C을 상대로 44,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의 잔존 가치가 위 44,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3) 피고 B이 2019. 1. 10.경 C을 상대로 44,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전제로 사해행위를 부인하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령 피고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대물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2)항의 관련 법리에 따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의 위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민수

판사윤중렬

판사김성준

별지

1)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가액 340,000,000원 - 위 64,000,000원 - 위 200,000,000원.

2)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가액 262,000,000원 - 위 50,000,000원.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 위

76,000,000원/(위 76,000,000원 + 위 212,000,000원), 원 미만은 버림.